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가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근거 마련〉

■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9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참가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8. 13.
3. 회부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참가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Ⅲ. 검토의견: 참가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근거 마련

- 개정안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하거나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로 인하여 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²⁾, 참가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³⁾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② (생략)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8조, 제18조의2----- -----.

- 1) 「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 2) 「행정심판법」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참가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로 인하여 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 참가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참가인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 심판참가는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심판절차에 참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제도임.

- 참가인은 재결의 주문에 의해 자신의 권리이익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심판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행정사건의 복잡화에 따라 행정심판에서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표 1]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른 행정심판 인용률 비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9월기준)
전체 사건 인용률(A)	8.6%	7.2%	5.8%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률(B)	22.7%	19.3%	14.5%
인용률 차이(B-A)	14.1%p	12.1%p	8.7%p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사건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다만, 행정사건은 그 유형이 다양하여 심판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제3자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상 심판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이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별 법률에서 참가인의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⁴⁾

4)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참가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다만, 참가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근거 규정을 참가인의 지위를 규정한 제22조가 아닌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의2제1항에 직접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함.

○ 더불어,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참가인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또한 청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

문 의 처
02)6788-5112